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3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3. 8. 30.에 발표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시외버스(고속버스포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본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선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자동차 중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